

## 답 변 서

사 건 2000가단0000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000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 주장사실 중, 피고와 소외 망 ◉◉●는 19○○. ○. ○. 혼인신고를 한 법률 상 부부였던 사실, 소외 망 ◉◉●가 20○○. ○. 아망한 뒤 피고는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을 각 3/13지분으로 상속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은 모두 부인합니다.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추버의	본안소송 계속법원
, _ ,	SOCIAL STATE OF THE STATE OF TH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제출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출 의 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
	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
   단병서의	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게 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
에 의	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u>'</u>	
	· · · · · · · · · · · · · · · · · · ·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하는데,  ·청구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반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
	<u>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u>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변론과 그 준비 >> 답변서